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박양호

대한민국 06235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11 미진빌딩 5
층 KNP특허법률사무소

발송일 (일/월/년) 2018년 09월 20일 (20.09.2018)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PCT2018-016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8/005838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8년 05월 23일 (23.05.2018)

우선일 (일/월/년)
2017년 08월 29일 (29.08.2017)

국제특허분류(IPC)
G01N 27/82(2006.01)i, G01V 3/10(2006.01)i, G01N 33/20(2006.01)i

출원인
(주)나우시스템즈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18년 09월 20일 (20.09.2018)

심사관
이헌길
전화번호 +82-42-481-8525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a)).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5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5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1603092 B1 ((주)나우시스템즈) 2016.03.14

D2: JP 6040190 B2 (NISSIN ELECTRONICS CO., LTD.) 2016.12.07

D3: KR 20-1999-0025340 U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1999.07.05

1. 신규성 및 진보성

1.1 독립항: 청구항 제1항

청구항 제1항 발명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피검출물(10)의 전자기 유도에 따른 제2 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검출부 센서코일(125); 피검출물(10)을 기설정된 방향으로 반송하는 기능을 가지는 반송부(100); 및 컨베이어 벨트 등의 기계적 장치를 포함하는 금속이물 검출장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단락 [0001], [0009], [0022] 및 도면 1 참조).

다만, 청구항 제1항은 금속이물 검출장치의 검출부는 센서코일과 상기 센서코일을 감싸는 보호케이스를 포함하고, 상기 보호케이스 내부에는 충전물질이 포함되어 상기 센서코일을 상기 보호케이스에 고정시키는 것을 더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용문헌 D1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차이는 인용문헌 D1과 동일한 기술 분야인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서치 코일(22)은 케이스의 하나의 예로서, 좌우 방향으로 연장되는 통모야의 각기둥 프레임(22a)을 갖는 것; 및 각기둥 프레임(22a)의 내부에는 에폭시 수지가 충전되고 있어 코일 본체(23, 24)가 수지 내에 몰드되는 구성인 것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단락 [0017], [0020] 및 도면 1 참조). 따라서 인용문헌 D1 및 인용문헌 D2에 기재된 상기 기술적 특징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청구항 제1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1.2 종속항: 청구항 제2항 내지 제5항

1.2.1 청구항 제2항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과 동일 기술 분야인 인용문헌 D3의 복수의 지지프레임(50)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페이지 2, 라인 49-58 및 도면 3 참조). 따라서 인용문헌 D1 내지 인용문헌 D3에 기재된 상기 기술적 특징을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므로,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2.2 청구항 제3항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자화부(110), 자화부(110)의 전단에 배치되어, 상기 피검출물(10)의 전자기 유도에 따른 제1 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진입부 센서코일(120), 상기 반송 경로 상에서 상기 자화부(110)의 후단에 배치되어, 상기 자화부(110)를 통과한 상기 피검출물(10)의 전자기 유도에 따른 제2 출력신호를 발생시키는 검출부 센서코일(125)(단락 [0009] 및 도면 1 참조)과 인용문헌 D2의 각기둥 프레임(22a)의 내부에는 에폭시 수지가 충전되고 있어 코일 본체(23, 24)가 수지 내에 몰드되는 구성인 것(단락 [0020] 및 도면 1 참조)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3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및 인용문헌 D2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2.3 청구항 제4항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검출부의 검출 방식을 단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 선택사항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제4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및 인용문헌 D2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1.2.4 청구항 제5항

청구항 제5항에 기재된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2의 각기둥 프레임(22a)의 내부에는 에폭시 수지가 충전되는 것과 동일합니다(단락 [0020] 및 도면 1 참조). 따라서 청구항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제5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문헌 D1 및 인용문헌 D2에 의해 PCT 제33조(3)에 따른 진보성이 없습니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

청구항 제1항 내지 제5항에 기재된 발명은 PCT 제33조(4)에 따른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